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5가단9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나790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5가단93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 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10.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2,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조미화

별지